

의안번호	제 44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15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#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04. 10. 15
제출자	사천시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미만일 때 무상 지원  
⇒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까지 무상 지원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  - 1) 신. 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  - 2) 입법예고(2004. 9. 3 ~ 2004. 9. 24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① 농기계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구입시 가격으로 기대당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. 단,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부품대금 징수) ①농기계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미만일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,그 이상일 때에는 원가(구입 시 가격)로 징수한다. 단.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7조(부품대금 징수) ①농기계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구입 시 가격으로 기대당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. 단,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지 방 자 치 법

### 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

3. 농림.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차. 지역산업의 육성. 지원

### 법 제15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### 법 제17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

시.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.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